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10
----------	------

제출년월일 : 2015. 2. 27.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 관련 일부 사무를 사무의 위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부도 지역의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사무를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이관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 관련 사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 (안별표2)
 -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 휴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등의 업무를 위임 법령에 맞게 정비함.
-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이관되는 대부도 지역 사무를 정비함. (안별표2)
 - 대부도 지역의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사무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가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비함.

□ 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농지법 제8조, 제35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5. 2. 2. ~ 2. 11.(9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최종은
	제장·팀장 직위·성명	조직교육제장 허진
	담당자 성명·전화	김정미 (행정 3108)

<별지>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 기관
생 명 산업과	1.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청문)	· 농지법 제55조	구청장
		2. 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처분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57조 · 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59조 · 농지법 제60조 · 농지법시행령 제58조	
	2.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사항	1. 영업신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2.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3.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청문)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45조, 제47조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3.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시 공수의 조례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행정조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한다)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위반건축물정비계획 수립·시행	· 건축법 제7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구청장
	2. 공동주택위반건축물 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	· 건축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 (행정대집행·계고·고 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건축법 제80조 · 건축법 제106조 부터 건축법 제111조	
		1. 공동주택 복리시설(단 지내 상가 등)의 무단 용도변경 및 증·개축 에 대한 지도(단속)· 감독	· 주택법 제59조 · 주택법 제91조	

구 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관련 법령	수임기관
건축과	3. 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내수선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단, 증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충수 및 연면적으로 함)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구청장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20조	
	5.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법 제83조	
	6.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 건축법 제38조	
	7.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내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주차장법 제19조의 4제3항, 제29조, 제32조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련 법령	수임 기관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생 명 산 업 과	1. 농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 대부통,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농지 처분의무 통지(청문)	• 농지법 제10조 • 농지법 제55조	구 청장	생 명 산 업 과	1. 농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 대부통,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청문)	• 농지법 제55조	구 청장
		2. 농지처분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 농지법 제11조 • 농지법 제62조				<삭 제>	<삭 제>	
		3. 유 휴 농지에 대한 대리 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삭 제>	<삭 제>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 제8조				<삭 제>	<삭 제>	
		5. 농지임대차 관리	• 농지법 제23조				<삭 제>	<삭 제>	
		6. 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 처분(청문)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57조 • 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59조 <신설>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2. 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 처분	• 농지법 제42조 • 농지법 제54조 • 농지법 제57조 • 농지법 제58조 • 농지법 제59조 • 농지법 제60조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법 련 형	수 임 기관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법 련 형	수 임 기관
생명산업과	2. 농지 원 부의 작성 및 비치 및 열 람 교부에 관한 사항 (대부동 동, 대부북 동, 대부남 동, 선감동, 풍도동 제 외)	1. 농지원부의 작성 및 비치	• 농지 법 제49조	구 청장	생명산업과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농지원부 교부 및 열람	• 농지 법 제50조			<삭 제>	<삭 제>		
		3. 자격증명 발급	• 농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 칙 제59조			<삭 제>	<삭 제>		
	3. 축산물 판매 업에 관한 사항	1. 영업신고	• 축산 물위생 관리법 제24조		2. 축산물 판매 업에 관한 사항	1. 영업신고	• 축산 물위생 관리법 제24조		
		2.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 축산 물위생 관리법 제26조			2.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 축산 물위생 관리법 제26조		
		3.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청문)	• 축산 물위생 관리법 제31조, 제45조,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청문)	• 축산 물위생 관리법 제31조, 제45조, 제4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4.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 시 공수의 조례		3.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공수의 위촉 및 운영	• 안산 시 공수의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렵 련 렵	수임 기관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렵 련 렵	수임 기관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 행정조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7종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한다)	1. 위반건축물정비 계획 수립 · 시행 2.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및 지도 단속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행정대집행 · 계고 · 고발 · 이행 강제금 부과 등)	· 건축법 제7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 건축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같은법 제80조 · 같은법 제106조 · 주택법 제59조 · 같은법 제91조 · 건축법 제11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117조	구청장	건축과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 행정조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7종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한다) 2. 위반건축물 현장 조사 및 지도 단속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행정대집행 · 계고 · 고발 ·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대부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강동, 풍도동 제외)	· 건축법 제7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 건축법 제3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건축법 제79조 · 같은법 제80조 · 같은법 제106조 · 주택법 제59조 · 같은법 제91조 · 건축법 제11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117조	구청장	
	2.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 불리시설(단, 지내상가 등)의 무단용도변경 및 증·개축에 대한 지도(단속) · 감독 3. 건축물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강동, 풍도동 제외)	· 주택법 제59조 · 같은법 제91조 · 건축법 제11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117조		2.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부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강동, 풍도동 제외)	1. 공동주택 불리시설(단, 지내상가 등)의 무단용도변경 및 증·개축에 대한 지도(단속) · 감독 3. 건축물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강동, 풍도동 제외) 1. 6종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단, 증축의 경우 허가·신고 전의 총수 및 연면적으로 함)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 주택법 제59조 · 같은법 제91조 · 건축법 제11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117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2】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렵 령	수임 기관	구 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관 렵 령	수임 기관
건축과	4.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공설 물 관 제외)에 관한 권한(대부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법 제20조	구 청장	건축과	4.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공설 물 관 제외)에 관한 권한(대부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 법 제20조	구 청장
	5.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대부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 법 제83조			5.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대부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건축 법 제83조	
	6. 건축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 건축 법 제38조			6. 건축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 건축 법 제38조	
	7.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주차 장법 제19조 • 주차 장법 제19 조의4 제1항(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7.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주차 장법 제19조 • 주차 장법 제19 조의4 제1항(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